

世宗大왕의 治績

—특히 濟州島에 關한 治績研究—

金 宗 業

.....目 次.....

- | | |
|------------------|----------------|
| I. 序 言 | (3) 刑罰에 關한 일 |
| II. 濟州의 沿革 | (4) 難民救恤에 關한 일 |
| III. 世宗大왕의 治績 | (5) 民弊에 關한 일 |
| (1) 教育에 關한 일 | IV. 結 論 |
| (2) 社會와 行政에 關한 일 | |

—Summary—

In the early years of the Era of Lee Dynasty, King Sejong built the Korean literature founded on the Korean Alphabet, the Hangeul under the background of a new order stabilized by the settlement of the regal authority of the founder of Lee Dynasty, and enlarged the Southern of the River Doo Man and the Arock, until he established the present boundary of Korea.

We Koreans had a epoch-making era of the complete national culture which involves the Korean and spirit, since the time of showing the motive on the formation of racial singleness in Shilla's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of Korea, which, one might say, is formed by the intensive and awakened subjectivity of Korean people.

King Sejong, especially governed the inhabitants of Jeju Island tenderly by means of his natural wisdom and gift, and brought the stabilization of life to people of this Island above that of the main land, in addition to the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culture.

King Sej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location and a keen insight on actual condition of life, got rid of not only all the conventional vices, public or private, during his administration period—thirty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standard of life on this island, but also

applied himself to the help of the poor by means of the reorganization of system, and timely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teps.

And Sejong took a great interest in the industry in this solitary island and showed the consideration and encouragement on industrial development as well as special products such as oranges, marine products, and breeding oxen and horses.

Sejong took a great deal care of Japanese committing an act of aggression and confirmed that Jeju island was a fortified zone for national defence and took every step on this point.

Jeju-island, by the administrative reform carried out by King Sejong, was converted from a mediaeval aspect into the modern age, which led to a cause of the development of Jeju island.

I. 序 言

高麗는 西紀1392년에 亡하고 同年 7월에 李氏朝鮮이 創建하여 強力한 中央集權化政策을 썼으므로 外地로 疎外되던 濟州도 政策上 觀念이 一變하여 本土化 政策으로 轉換하여 國初부터 學校를 設置하여 地方人 子弟들을 教育시켜 官吏登用の 門을 열어주어 濟州人으로 하여금 中央에 出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太宗때에는 耽羅의 오랜 傳統인 星主와 王子職이 廢止되고 濟州는 中央集權化의 한 개의 郡縣으로 되었고 李氏朝鮮은 濟州가 南海上의 國防上 重要な 位置를 占據하고 있음을 認識함과 同時에 特히 倭寇防衛에 臨하여 注力을 하였고 또 良馬와 柑橘의 特產地인 關係로 朝廷에서는 特別히 關心을 가져 重要視하였다.

濟州는 季節風 關係로 風害와 旱災로 凶年이 잦아 疾病과 飢饉이 많아 朝廷에서는 貧民과 疾病 및 飢饉救濟에 온갖 努力을 하였고 宣慰官을 派遣하여 民情을 살피고 慰撫도 하였다. 本 論稿는 李朝初期 世宗時代에 濟州島에 對하여 世宗大王의 三十二年間 (1419~1450) 에 걸쳐 이루어 놓은 治績을 列舉評價하는 데 있으며 其 治績中 濟州島의 馬政에 對하여서는 다음 機會에 發表하기로 하겠다.

II. 濟州의 沿革

耽羅의 名稱은 三國 鼎立以前부터 내려오는 部族聯盟體의 名稱으로서 이밖에 屯羅 耽牟耽 涉羅 儋羅 耽浮羅 등으로 呼稱하여 名稱上 多様하다. 中國側 文獻 三國志 魏志東夷傳에는 州胡란 名稱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 文獻는 陳壽의 撰이요 陳壽는 晉나라 惠帝七年에 西紀297년에 死亡하고 있어 耽羅의 名稱도 西紀297年以後에 呼稱된 名稱이 아닌가 推測된다.

濟州는 韓半島 西南海上에 位置하여 있는 絕海의 大島이며 其面積는 1,819km²에 達하며 中央에 솟아있는 漢拏山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本島는 우리나라 最南西쪽 海上에 孤立되어 있는 漢拏山의 영향으로 強風이 많고 多變性 日氣變化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氣溫이 溫和하고 特히 南쪽 西歸浦는 南國이 情緒를 풍겨주는 것이 特色이다.

氣溫은 年平均 14.7C이며 降雨量도 年平均 1,440mm이 多雨帶를 形成하고 있다.

住民들은 農牧과 漁業으로 生計를 維持하며 이곳 開國은 地神族說이 說話의 形態에 依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其 建國說話에는 毛興穴에서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의 三神이 나와 狩獵을 生計로 삼으며 原始生活을 하다가 하루는 東海海邊에서 나무箱子를 얻어 열어보니 한 使臣이 青衣의 三處女와 駒犢과 五穀의 種子를 갖고와서 日本國의 使臣이라

하여, 日本王이 이 三女를 낳고 西海의 中嶽에 三神이 내려와 開國코자 하나 배필이 없다하여 命을 받아 모시고 왔으니 배필로 定하여 大業을 이루라 하고 사라졌다. 三神은 各々 三女를 聚하여 살면서 五穀을 심고 땅아지를 길러 開拓하였다 한다.

濟州의 對外關係는 新羅時代 高乙那의 後孫인 高厚의 三兄弟가 新羅王朝에 來朝하여 新羅王이 高厚 三兄弟에게 各々 星主, 王子, 都內的 號를 주고 國號를 耽羅라 稱하게 하였다고 高麗史地理誌에 記錄되어 있으나 耽羅의 國號의 始作年代는 未詳이다.

百濟의 隆盛으로 耽羅는 東城王 20年 西紀498년에 百濟에 隸屬되었고 百濟가 滅亡後 西紀662년에 耽羅國主 佐平 徒冬香律이 新羅에 來朝하였다. 이후부터 耽羅는 270餘年間 新羅에 隸屬되어 新羅文化를 받아드려 儒敎 및 佛敎文化의 影響을 받게 되었으며 新羅가 亡 한후 高麗太祖21年 西紀938년에는 太子 末老가 高麗王朝에 來朝하였으므로 太祖는 末老에게 星主 王子의 爵號를 주었으며 15代 肅宗10年 西紀1105년에는 耽羅郡이라 改稱하여 高麗王朝의 郡縣으로 化하였다.

毅宗때 守良等의 謀反事件으로 耽羅郡이 縣으로 却下되어 이후부터 漸次 自治的인 地域에서 中央官署의 直轄地로 轉換해 갔다. 西紀1270年 元宗11년에는 權力爭奪의 禍中에서 苦杯를 마신 襄仲孫一派는 三別抄의 亂을 이르켜 江華島로부터 珍島에와서 官軍과 抗戰하다가 三別抄의 領袖 金通精이 珍島에서 敗北하여 軍卒을 이끌고 濟州에 들어와 本據地로 삼고 高麗朝廷에 抗拒하였다.

이때 高麗朝廷에서는 元朝의 支援를 얻어 麗蒙聯合軍을 編成하여 三別抄의 亂을 平定한 후 耽羅國 招討司를 設置하고 뒤에 軍民都 達魯花赤總管府라고 改稱 하였다가 1284年 忠烈王 10년에 軍民安撫司라 改稱하여 蒙古의 直轄地로 만들었다. 元朝가 耽羅를 直轄地로 삼은 것은 日本 또는 南宋을 攻略하는데 있었다. 元나라는 1279년 忠烈王5년에 처음으로 耽羅에 牧馬場을 設置하였다. 忠烈王은 耽羅의 返還을 元에 稟請하여 1294년에 도로 찾코 翌年 1295년에 濟州라 改稱하여 처음으로 判祕書省事 崔瑞를 牧使로 任命하였다.

西紀1300年 忠烈王 26년에 다시 元나라는 濟州를 牧馬場으로 하였으나 1305年 忠烈王 31年 다시 高麗에 復歸되었다. 1318年 忠肅王 5년에 草賊, 士用, 嚴卜, 等 亂을 이르켰으나 濟州人 文公濟가 討平한 후 元朝는 다시 官吏를 두었고 1362年 恭愍王 11년에는 元나라에 隸屬될 것을 請하여 阿但不花로서 耽羅萬戶로 삼았다.

元나라의 牧馬場에는 牧胡를 派遣하여 말을 기르게하여 高麗末年까지 牧胡의 손으로 牧馬場을 經營케 하였다. 元나라가 濟州에 牧馬場을 設置하여 經營한 期間이 約 一世紀나 되어 元나라 사람들이 移住者도 많았고 蒙古式 生活樣式도 傳하여져 蒙古風俗이 漸々 짙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후에는 牧胡의 勢力이 相當히 強하여져서 每々로 亂을 이르켜 官衙를 放火하고 官吏를 殺害하는 等 橫暴가 甚하여 高麗朝廷에서는 1374년에 崔瑩將軍

을 濟州에 派濟하여 討平케 한 일이 있다. 1389年 昌王1년에 明나라의 洪武帝가 高麗에 國書를 보내와 耽羅에 元室의 子孫을 살게하여 후사를 끊지않게 하라하고 雲南王의 拍拍太子 및 女婢 60名과 梁王의 子孫들을 濟州에 보내어 살게 한 일도있다.

約 一世紀間에 걸쳐 蒙古人들의 來往은 濟州島民의 言語 血統風習에 一大 變革을 가져 왔으며 北方系統이 文化도 蒙古人에 依하여 傳來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高麗가 李氏朝鮮에 依하여 交替됨에 따라 西紀1402年 太宗 2년에 濟州의 星主 高鳳禮 王子 文忠世가 來朝하매 太宗은 星主와 王子의 稱號를 없애고 星主에게는 左都知管 王子에게는 右都知管이라 고쳤고 1408년에는 濟州監牧官을 設置하였으며 1413년에는 大靜縣과 旌義縣 兩縣을 東西로 設置하며 世宗朝에 와서는 1428년에 監牧官을 없애고 1443년에 安撫使로 牧使를 兼任케 하여 1445년에 左右知管을 없애버렸다. 1905年 高宗9年에 牧使의 制度를 廢止하고 郡守를 두었으며 1914年 3월에 大靜 旌義 兩縣을 廢止하고 濟州郡에 併合할 때 楸子島를 莞島郡으로 부터 濟州郡에 編入 하였다.

1914年 5월에 郡制를 廢止하고 島制를 實施하여 島司를 두었다. 面을 分割하여 13面으로 하고 1930年 12월에 濟州面을 邑으로 昇格하고 1946년에 全羅南道로부터 分離하여 道로 昇格 南北二郡을 設置하였으며 1955年 9월에는 北濟州郡에서 濟州邑을 市로 昇格해서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濟州道의 行政區劃은 一市二郡三邑 十面에 行政單位의 洞 및 里가 200個 自然部落이 497個로 形成되어 있다.

Ⅲ. 世宗大王的 治績

(1) 教育에 關한 일

李朝初期부터 儒敎中心의 學風의 振興하여 爲政者는 朱子學을 國家治國의 原理로 擇하여 儒學振作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特히 世宗임금은 朝鮮王朝 國王中 가장 傑出한 君主로서 王의 治世中 內治 外交上에 큰 發展을 보이고 朝鮮文化上으로 偉大한 業績을 많이 남기신 임금이다. 特히 濟州에 西紀1392年 太祖元년에 鄉校가 建立되었으며 이 鄉校를 西紀1435年 世宗 17년에 再造하여 훌륭한 鄉校로 發展시켰으며 또 世宗임금은 大靜縣과 旌義縣에 西紀1420년에 鄉校를 設置하여 島民의 文化的 敎養은 勿論 生活向上에 配慮를 아끼지 않았다. 또 世宗임금은 鄉校의 生徒들을 爲하여 敎材를 많이 下賜하여 四書五經의 經書와 性理學에 對한 儒書가 濟州에 들어와 島民의 子弟들에게 儒學에 對한 學問의 關心을 갖게 할 뿐 더러 濟州의 儒學振作에 큰 業績을 쌓았었다.

濟州人들의子弟들은 이時期를 기하여 四書五經은 勿論 朱子學인 性理學에 對하여 서도 教授官으로부터 教授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되며 忠孝의 思想을 體得하여 一般社會 生活의 規範으로서 生活化하는데 더 좋은 時期가 되었을 것으로 思料 된다.

- ① 舊在嘉樂川西岸上 萬曆壬午 牧使 金泰廷 移創東南城內 金處禮 舊鄉碑 我太祖元 年壬申學校 成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 (李元鎮 耽羅志)
- ② 濟州 京在所 上言 大靜 旌義二縣 始置 鄉校 兩縣生徒 各々五十餘人 請選州人 經明行修者 爲教導 (王朝實錄卷10 P 417)
- ③ 賜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書 禮記 易春秋 性理大全 各二件 小學十件 干濟 州鄉校 (王朝實錄卷69 P653)

그러나 世宗十七년에 濟州人의 德化의 目的으로 弘化閣을 建築했으나 弘化閣 건축時 官府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火災가 發生하여 耽羅國時代로부터 儒生들이 心血를 傾注하 여 모아 놓은 典籍들이 一時에 灰燼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깝기 짝이 없으며 李朝以前의 耽羅史研究에 莫大한 支障을 주고있는 것도 事實이다.

世宗입금은 學問以外에도 濟州島의 立地의 要件을 考慮하여 國防에 配慮하시어 島民의 子弟들의 訓練을 爲하여 武藝訓練場인 觀德亭을 西紀1448年 世宗30년에 지어 壯丁들을 訓練시켜 有事時에 對備한 것은 特記할만한 일이다.

더구나 李朝太宗以來 倭賊의 侵入의 잦아 濟州防衛는 其對象이 倭賊들이었으며 또 倭賊 들은 隨時로 濟州沿岸地方에 橫行하며 寇掠하는 者들이므로 언제 어디서 나타나 寇掠질 을 할지 모르므로 恒常 倭賊에 對備해야 했던 것이다.

世宗朝에 倭賊을 爲한 防衛體制는 確立되었고 倭賊이 侵入하여 들어오기 쉬운 竹島와 牛島의 近接地인 遮歸防禦所등 22個所에는 烽火候望所도 新設하여 倭賊侵入防禦에 萬全 을 期할 뿐아니라 濟州島民의 倭賊에 對한 공포心を 덜어주고 生業에 從事하게 하였으며 世宗입금은 濟州島의 立地의 要件을 감안하여 國防面에 있어서 큰 關心과 經綸을 가져 治世中 諸般施策에 配慮를 아끼지 않았었다.

(2) 社會와 行政에 關한 일

① 人口의 動態

李朝初期의 濟州의 人口는 2216戶로서 戶當 8人 (奴婢包含) 으로 計上하여 17,728人에 不過하였는데 15年후인 世宗16年 西紀1434년에는 濟州人口가 四倍 以上으로 急增을 하여 63,474名으로 統計가 王朝實錄에 登載되어 있다. 이 事實은 世宗입금이 濟州島를 爲하여 諸般 分野에 걸쳐 過去로부터 내려오는 公私積弊를 과감하게 革除하고 安定된 社會를 形

成하는데 온갖 庶政을 革新하고 島民으로하여금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할 수 있겠끔 興作을 形成하여 樂園濟州를 이룩한데 基因하여 四方에서 人口의 移動이 이루어져 濟州島의 人口가 急増을 보게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그러나 世宗임금은 濟州島가 土地가 狹少하고 風災旱害가 잦아 島民의 食糧의 不足을 잘 알므로 過剩人口 解決策으로 濟州島內 牛馬盜犯 및 盜殺犯 不農者 窃盜罪를 犯한 公私賤 및 平民을 他道 特히 平安道 沿海地方으로 移住시켜 土地를 給與하여 生業에 從事케 하였으므로 世宗17年頃의 濟州의 人口戶數는 9,925戶인데, 世宗末頃에는 7,247戶로서 約 2,690戶가 減少되었다.

世宗임금은 過剩人口와 食糧關係까지도 細心히 配慮를하시어 其解決策까지 마련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었다.

- ① 濟州賑濟使 啓 濟州牧 2,216戶
旌義縣 645戶 大靜縣 620戶云云 (王朝錄卷3의32 P311)
- ② 吏曹 啓 濟州領內 大靜縣 1,327戶
旌義縣 850戶 請兩縣 各差 教導 從之 (王鮮實錄 卷34~P52)
- ③ 濟州安撫使 啓本州三邑俱失農業 義倉雜穀及田稅不收者過半 且無救荒之物 今考三邑人丁之數壯老弱共 六萬參千四百七十四名云云 (王朝實錄 卷66의23, P604)

② 三年居喪과 守墳

李朝以前에는 濟州島에 있어서 父母의 喪을 만나도 高麗의 佛法에 依하여 禮式을 行하여 朱子家禮에 立脚한 守墳이나 三年居喪制는 實施하지 않은 것으로 思料된다. 韓半島에 朱子學의 수입은 西紀1299年으로 되어있다. 濟州人 文邦貴의 父는 太宗6年 西紀1406年에 死亡하였다. 李朝의 創業이 1392年으로 미루어 볼때 濟州島民의 生活에 直接 朱子家禮가 影響을 주기 시작한 것은 太宗即位以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濟州島에 教育機關이 設置된 것도 太宗以後로 나타나 있으므로 孝에 對한 島民들이 觀念도 教育을 通하여 體得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濟州島에 있어서의 守墳의 制와 三年居喪制의 實施는 濟州島民의 孝의 思想에 큰 影響을 주었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濟州島民의 忠孝中心의 社會慣習도 이 時期를 기점으로 하여 展開되어 發展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 ② 濟州 前主簿文邦貴 州俗 不行三年居喪歲 丙戌父沒 守墳三年 喪制悉遵家禮 以樹孝風 鄉人効之 守墳者三人 行喪三年者十余人 (王朝實錄 卷7의10, P366)

③ 물에 對한 問題

濟州島의 물 問題는 예나 至今이나 마치 한가지로 爲政者의 걱정거리의 하나이다. 世宗

朝에 있어서도 例外없이 問題로 濟州島의 縣의 治所가 遷所를 하지 않으면 안될 程度로 論議가 發展하여 朝廷에서도 關心이 大端하였다. 實錄에 登載한 記錄을 보더라도 旌義縣이 경우는 물을 汲水하는데 城內에는 無水泉인 故로 汲水를 하는데는 城外 15里可量가서 得水를 하였다고 하며 大靜縣도 汲水하는데 5里可量 城外로 가서 得水 하였다 하니 關係로 얼마나 苦心하였는 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敬差官 朴好門 啓狀을 아니 올릴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 啓狀에 依하여 世宗임금은 即時 工曹에 下命을 내려 眞相을 調查하게 하여 旌義縣治所를 晉舍里(至今의 城邑)로 移築하게 하였다.

- ① 濟州敬差官 司僕小尹 朴好問啓 旌義 大靜 兩縣 城內皆無水泉 故旌義則 汲水于15里許 大靜則五里許 倘有 倭寇圍城 累日 則海中孤島 無由活命請移旌義于免山 大靜于甘山 命判府事崔閔德 工曹參判 朴坤等同議 僉曰 旌義 大靜城內 若無井泉 則當依好問所啓 兩處 移設便否及可移處 更令敬差官 同安撫使 看審命下兵曹 (王朝實錄 48의26. P 240)
- ② 工曹啓 旌義縣人 前副正 崔興雨等 138人告縣城內 無泉 且大山臨壓 矢石所及 請移於晉舍里 議政府 諸曹請遣人 審視然後 更議 (王朝實錄 卷18의11 P 510)
- ③ 移築 旌義城於 晉舍里 (王朝實錄 卷18의23 P516)

④ 官吏起用에 對한 일

世宗임금은 濟州島이 判官이나 牧使를 起用官吏로 任命할때 慎重히 人選을하여 聖旨를 가장 잘 받으려 濟州島民의 救恤은 勿論이요 其 業을 平安케 할 수 있는 人材를 任命派遺 하였으며 特히 濟州는 國防上 重要한 곳이며 또 軍馬供給地로서 큰 位置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人選에 있어서는 恒常 儒臣으로서 武才에 能한 人材를 擇하여 任命을 하시었다.

- ① 濟州判官 李堅義 辭引見曰 濟州人多 窄民不聊生 往哉 恤民俾安其業 (王朝實錄錄 卷770의11 P660)
- ② 濟州牧使 李鳴謙 辭上傳敎曰 爾近侍已久 且以儒臣兼武才 豫乃嘉之 濟州重地也 今聞馬匹多死 且買馬體 甚倭少 前此以牧使者 不以爲意 爾其盡心 布置如有所啓之事 須即啓達 (王朝實錄卷125의13. P143)

⑤ 醫療關係에 對한 일

濟州島는 李氏朝鮮初期까지 醫療에 關한 記錄이 稀少하다. 그러나 耽羅國의 體制가 李朝初期에 무너지고 中央集權化가 強力히 推進됨에 따라 濟州는 中央과의 關係가 急進的으로 進展되었으며 仁慈하신 世宗임금이 即位와 더불어 人口가 急增하였고 中央과의 往來도 빈번하여 對人關係가 急激히 많아졌다.

따라서 濟州島에 있어서의 患者數도 많아짐에 따라 醫療關係에 關心도 커져 世宗임금은 이 실정을 감안하여 濟州島民을 爲하여 醫生의 養成과 醫生의 他道進出을 時限附로 막으며 또 安撫使에게 旨를내려 醫書十七件을 보내와 醫生에게 가르쳐 疾病을 治療하게 하였다.

① 吏曹 啓濟州人醫業 不精 三邑病人未易 救療 又教諭 周年之後 無故타差 非徒海外往還有弊 受職三四朔後赴任 七八朔內教諭之任 難以責成 乞依守令 教授官例 滿三十箇月 方許타差 安撫使 考其生徒教訓 功課及病人救療之數 褒貶能者京職叙用 馬醫方亦別教誨檢律 適期及律文教 誨亦依教諭例施行 從之

(王朝實錄 卷52의7. P310)

(3) 刑罰에 관한 일

濟州는 中央과의 巨離가 너무나 멀고 또 陸路가 아니므로 交通上 支障이 많다. 더구나 中央에서 任命 派請된 判官牧使等 官員들은 絕海孤島인 濟州에 赴任하여 時間이 흐르며 따라 地方의 土豪 및 權勢家들과 結託하여 致富를 이룬 判官牧使들도 있거니와 또 土豪 權勢家들은 判官牧使等 官員들을 甘言利說로 誑여 自己들의 利權을 爭取하는 한편 一般 百姓는 勿論 公私奴婢를 함부로 死刑 殺害하고 또 公的인 進上物에 對하여 詐取私腹을 채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런 事實은 中央에 알려지지 못하고 恒常 一般島民은 土豪 及 權勢家와 守令等의 中間에서 悲慘한 生活環境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世宗임금은 遠巨離에 있는 濟州島에 恒常 配念하시와 察訪들을 派遣하여 濟州島의 實情을 把握함과 아울러 牧使判官守令等의 非行에 對하여 調査를 철저히 하고 新上辨 辨主義에 立脚하여 刑罰을 嚴하게 執行 하였었다.

또 濟州前千戶 崔鳳이 自己집 울타리에 있는 柑子를 摘取하여 祖上에 올림에 安撫使는 崔鳳에게 監守自盜의 罪를 適用시켜 決杖刺字하여 刑罰함에 世宗임금은 安撫使의 處事는 理知에 맞지 않으며 刑罰이 甚하다하여 其事實을 調査하여 報告토록 하시었다.

또 濟州牧使 趙希鼎의 私奴 洪龍을 함부로 刑罰하여 죽게하고 進上한다. 托하여 民間人의 耳진 眞珠를 收斂하였고 前 旌義縣監 梁孟智 進上한답시고 官婢와 遊女를 動員하여 綿과 苧布를 짜게하여 私服을 채우고 良馬를 사서 權門에 賂物로 바치고 大靜縣監 李伸는 布木과 鐵等의 官物을 收納하고 前教諭 裒敬之等과 結託하여 殖貨하여 買馬하고 前安撫使 金素가 左議政 李原이 보낸 匹段은 營庫에 넣고 良馬와 바꾸어 보내었다.

이런 事實은 世宗八年 十一月에 當時 濟州察訪 金爲民에 依하여 啓請하니 世宗임금은 司憲府에 下命하여 徹底히 調査하여 處罰토록 하시었다.

이렇게 牧使 縣監 教諭 등의 非行을 調査究明하여 處罰한다는 것은 이 時代의 政治的 構造로 볼때 相當히 어려운 問題이다. 그러나 世宗임금은 政治的紀綱을 바로잡기 爲하여 斷乎히 決斷을 내렸으며 一般百姓의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

- ① 傳旨司憲府 濟州住前千戶崔鳳 俗節摘自家柑子 薦其先祖 安撫使 論以監守 自盜 決杖刺字 非理枉刑莫甚於此 其推効以聞 (王朝實錄 卷32의19. P26)
- ② 濟州察訪金爲民 啓濟州牧使 趙希鼎 濫刑私奴 洪龍致死 衛門入役 皮匠托以進上 收歛民間 耳填眞珠受私奴金絲玉纓 使祿強婚 守信私婢式分 前旌義縣監 梁孟智每 年夏節 托以進上 多聚官婢遊女 織造綿苧布 買良馬 納賄權門 大靜縣監 李伸 自己品布品織 以官物收納 前教諭襄敬之 前檢律 堅自持 前教授官李正文等殖貨買馬 前安撫使金素 以左議政李原 所送匹段 納之營庫 換送良馬 請下收司 국問下司憲府 (王朝實錄 卷34의8 P49)
- ③ 刑曹啓於濟州 依各道例 差遺檢律 以訓律文 其徒流以下刑各 令都安撫使 直決 毋使淹滯 用伸冤抑 (王朝實錄 卷5의5 P331)
- ④ 司憲府啓 李貼爲 旌義縣監時 愛濟州官妓 盜給官物 又以私買 滯商船于羅州 遭風 敗沒 溺死者 二十余人 贓罪雖在赦前使人溺死不可 不懲請依大明律 過失殺條 徵贖 均給死者之家 上從之 (王朝實錄 卷10의22 P430)
- ⑤ 司憲府 啓濟州安撫使 趙希鼎 道掌內皮匠留于衛內四十八日以官中 鹿皮二領 麋皮一領 常氈及 梁孟智所贈麋皮二領 鹿皮二領 造靴鞋及鞍自用 且受掌內 金祿玉纓 又於各處 贈送雜物計贓赦後入己五貫七百六十八文贈與三十三貫二百五十四文 照律該 杖一百流三千里 刺字濫刑私奴 洪龍致死罪杖一百 徵銀十兩眞珠稱爲進上納官 無異 內府之物以小者進上 大者贈李原 忘君附勢 其心不忠 比盜內府財物 律處斬從之 (王朝實錄 卷37의21 P91)

(4) 難民救恤에 關한 일

西紀 11世紀 末頃 高麗文宗時 나타난 記錄에 依하여 濟州島一般民의 生活는 悲慘하였 으며 土地는 갈자 그대로 耕作해도 穗不實이었고 一般農民들의 主食問題만 해도 自給自足 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農民漁民 할 것없이 食糧問題는 深刻해질 뿐이었다. 더군다나 高麗朝廷을 爲始하여 京來官에 對하여는 特產物과 歲貢을 負擔하였을 뿐만 아니라 星主와 王子에 對하여서도 進納과 賦役이 있었고 때로는 暴政과 守令들의 苛歛誅求로서 島民을 괴롭혀 島民들의 社會的 經濟的 位置는 마치 西歐社會 中世領主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農奴以上の 처지였다고 본다.

高麗朝가 滅하고 李氏朝鮮創業과 아울러 濟州島는 前上古의 中世의 體制를 벗어나 近世의 體制로 轉換하여 李朝의 政治的 經濟的 保護下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世宗임금當時 濟州島는 聖主의 文明의 惠澤과 懷柔의 德을 입어 風俗은 改良되고 百姓은 平安하며 土着한지 오래다 그러나 世宗15年 1433년에 濟州島는 秋季부터 翌年 夏季까지 降雨가 없어서 가뭄이 甚하여 山川草木이 말라 온갖 것이 시들어 버려 百姓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牛馬는 수없이 쓸어졌다. 이때 世宗임금은 걱정하시고 朝臣에 下命하여 이르되 濟州地方은 우리 朝鮮에 所屬되어 良馬를 產生하고 여러가지 特殊한 貢物이 生産되어 나라가 힘입음이 있는데 其土地는 狹하고 其百姓은 가난하여 生活이 困難하며 倭賊들의 侵害는 잦고 草賊들은 몰래 일어나 百姓을 괴롭혀 내 본디 그 지킴을 어렵게 여기고 있다. 또 近來에 와서는 한발로 因하여 해를 이어 凶年이 들고 百姓은 道탄에 빠지니 내 심히 濟州島民을 불쌍하게 생각 한다.

더군다나 바다에 막히고 더욱 堂下에서 멀리 떨어져 百姓들의 기쁨과 슬픔과 또 政事의 좋고 나쁨을 어찌 다 이 눈과 귀로 能히 알리오 마땅히 兩府의 여러 훌륭한 臣下中에서 文武와 才略 그리고 威惠가 卓越한 臣下를 慎重히 揀擇하라하시니 이에 前工曹參判 益陽崔海山을 천거하니 世宗임금은 기뻐하시와 그대로 崔海山을 濟州島 都安撫使兼判牧使로 任命하고 赴任케 하였다.

世宗임금의 濟州島를 얼마나 가엽게 생각하였으며 또 濟州島民을 지극히 사랑하였는가 그리고 其 얼마나 훌륭한 政治的配慮인가 古代中國의 堯舜임금도 이렇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世宗임금의 一言一句가 모두 民意와 民福을 爲하여 나타나 있으며 오늘날 民主主義體制에서도 達成하기 어려운 政事를 15世紀中葉에 世宗임금은 達成하고 있다.

이것은 世宗임금의 性品과 仁德의 實際現實社會에 發露된 것이라고 生覺됨과 同時에 世宗임금을 東方의 堯舜이라고 하는 것도 過言은 아닌 것 같다.

名君 밑에 名臣이 있다고 한다. 崔海山牧使는 赴任以來 聖旨를 받으러 碎身粉骨 濟州島民의 難民救恤과 民福을 爲하여 盡力하였다. 濟州島民들은 崔海山牧使를 어버이처럼 섬기며 欽仰하였다.

또 世宗임금은 政事를 보다가 말이 濟州의 飢饉에 미치자 大端히 걱정 하시었다. 禮曹判書 許穰가 賑恤에 對하여 아뢰기를 일찌기 去年에도 飢饉이 있어서 朝廷에서는 아직 救恤를 舉行치 못하였으니 마땅히 빨리 米穀을 운수하여 飢民을 賑恤하소서 하였다.

또 戶曹判書 崔迺가 아뢰기를 먼저 쌀 300斛을 운수하고 飢民의 狀態를 調査하여 連續하여 수송함이 便利합니다 하였다.

世宗임금은 빨리 사람을 시켜 운송을 독려하여 飢民을 救恤하라고 下命하시었다.

世宗임금은 即位初부터 政務에 多事함에도 不拘하고 濟州島의 飢民을 爲하여 直接 禮

曹, 戶曹判書를 불러 善處토록 指示를 하여 濟州島難民救濟에 配慮를 하시었다.

李朝時代に 있어서 田結問題와 租稅問題에 對하여서는 언제나 爲政者의 苦心하는 바이지만 特히 世宗治世에 이르러 租稅問題에 對한 深刻한 討究가 여러번 擧論되었다. 稅制改革의 前提로 全國 田土의 改量乃至 等級調查의 問題가 먼저 提擧되어 드디어 世宗25年 西紀 1443년에 田制詳定所를 두고 田制를 審議하였다. 田品等級에 있어 意見一致를 못하더니 翌年 西紀1444년에 六等級說를 採擇하여 田品六等의制를 確立하고 또 年分九等의 法을 案出하여 實施하게 되었다.

田分은 全國의 土地를 肥瘠에 따라 六等級에 나누어 隨等異尺의 法을 써 每等の 量尺을 달리하고 年分은 年の 收穫을 凶豊에 따라 九等으로 나누되 每一結의 稅額을 最高 20斗부터 最下 四斗에 이르도록 規定하였다.

世宗임금은 濟州의 田結에 對하여서도 土地制度上의 모순이 있는 것을 짐작하여 濟州에 있어서의 土地는 山田과 沙田으로 되어 있어 農民들의 힘을 다하여 耕作을 하여도 餘裕가 생기지 않아 恒常 貧困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世宗임금은 濟州의 土地를 再測量하여 至今까지 三甲으로 되어있는 것을 五甲 或은 六甲으로 降等하여 租稅를 收納하며 民弊를 사지않도록 하라고 下命하시었다.

① 地瘠民貧 高麗文宗12年門下省奏 耽羅地瘠民貧 推以木道經紀 謀生州記土性浮燥 墾田必驟 牛馬以踏之 連耕二三年 則穀穗無實不得已又墾新田 功培獲少所以民 多困窮
(耽羅志 李元鎮)

② 及我李朝 益被聖主文明之化 懷柔之德風移俗易 民安土着久矣 歲在癸丑自其年 秋至翌年夏 不雨而旱 山川滌滌 百物凋耗 人飢馬斃 不知幾矣 宸心軫慮命廷臣若曰 濟州之地爲我附庸良馬之出 異賈之產國 有賴焉而 其地薄其民貧 海寇絡繹 草賊竊發控禦爲難 豫素難其守矣 近因旱暵連歲凶 數民多飢餓 豫甚恤焉 况隔海外 尤遠於堂下民之休戚政之得失豈豫耳目之所 能及知乎 宜於兩府之賢 文武才略 威惠並著者 慎簡以聞於是擧 前工曹參判益陽崔公海山以聞 上心載 悅以爲允當 即於甲寅秋八月初七日命下爲 都安撫使兼判牧使
(耽羅志 李元鎮)

③ 視事語及 濟州民飢禮曹判書許稷啓賑濟事 曾於去年十月已下 尙未舉行 宜速輸米 以賑之
戶曹判書 崔迺啓 先輸米300斛審問飢饉之狀 連續輸送便 上曰 宜速 差人 督運以賑窮之
(王朝實錄 卷3의8 P 299)

④ 濟州子弟 文忠德 高得宗上言 濟州邈在海中 未有收租 儲備之法 故一遭水旱 人無所資 未免餓殍 今國家降從寬典 依兩界例量田 欲立收租之法 以備不虞 然濟州土地

磽薄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培其功 而常有卒歲 無食之嘆 因此不事農業 而務行 商賈者頗多 其打量之際 山田 沙田 雖依本朝田制悉降三甲 然人心安於舊習 猶以為重 收租之際 不無愁嘆 傳曰 因時制宜 使合於人情 而宜於土俗 伏望下令有司 其沙田山田 或降以五甲六甲而打量 以寬其稅 則民心 不駭而公私兩便矣 上乃命隨 宜打量使無怨咨 (王朝實錄 卷 5의10 P336)

(5) 民弊에 관한 일

世宗九年 西紀1427年 濟州島察訪 金爲民이 民願에 依하여 仔細히 調査한 公私積弊에 對한 狀啓를 朝廷에 올렸다. 世宗임금은 金爲民의 意見에 좃아 모든 民弊를 一掃하고 또 다시 그런 民弊가 일어나지 않도록 嚴禁하였다.

이 公私弊風은 濟州島特有的 風俗에서 派生된 弊風과 京來官土豪等權力家들에 依해서 나타난 弊風인데 其內容이 자못 特異하며 他地方에서 볼 수 없는 것도 많고 其手法은 악랄하고 巧妙하였던 것으로 봐 其當時의 濟州의 社會上과 一般百姓들의 生活相의 一而을 엿 볼 수 있는 貴重하고도 興味있는 資料이다.

① 奉足使役의 弊

金爲民의 狀啓에 依하면 濟州公私間에 積年弊事に 對하여 아뢰기를 臣의 濟州에 到着함에 告訴하는 者 많았으니 告訴內容인즉 土豪가 良民을 強占하고 奉足이라 稱하여 奴隸와 같이 使役을 恣行하는 故로 良民의 子息이 八, 九才가 겨우되면 임의 土豪에 占有되어 아비가 아들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관가에 呼訴하여도 土豪의 弄奸으로 冤抑함을 拂지못하 오니 請컨데 禁訪을 세워 安撫使로하여금 推劾하고 良民을 強占하여 奉足이라 稱하여 使役하는 者는 法에 依據 痛懲하여 其民弊를 革除하옵소서 世宗大王은 金爲民이 意見에 좃아 允許하였다.

① 濟州島察訪 金爲民啓 謹將濟州公私 積年弊事 條例以聞 臣到濟州告訴者如雲 皆土豪影占良民事也 問之則 皆曰此地邈在海外 守令紀綱陵夷 土豪恣行 自占良民稱爲 奉足 使之如奴隸故良民之子 年才八, 九已爲所占而父不得爲之子 雖訴於官 未有不爲 權豪所弄冤抑何由得伸請嚴立禁防令安撫使 推劾如有強占良民稱爲奉足役使者依律 痛懲以除其弊 (王朝實錄 卷36~21 P77)

② 農時田獵의 弊

濟州의 土地가 本來砂石이어서 農利가 豐饒치 못하여 小民의 生活이 참으로 念慮되거 늘 매양 安撫使는 六, 七月農繁期때를 당하여 鞍籠 獐鹿皮를 進上하다. 托하여 農民을

몰아 여러날을 田獵하여 百姓으로 하여금 農事짓는 時期를 농치게하여 其弊가 적지않으니 請컨데 外班에 傳旨하여 鹿皮鞍籠과 毛獐皮 및 阿多介等を 一切蠲免하여 弊端을 고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② 濟州土地 本皆沙石農利不饒 小民之生誠爲可慮 每等安撫使當六, 七月正農之時托以 進上 鞍籠獐鹿皮盡驅農民累日田獵 使民失時其弊不小請傳旨外班 鹿皮鞍籠與毛獐及 阿多介等物一皆蠲免以革其弊 (王朝實錄 卷36~21 P.77)

③ 民間所有柑橘의 官占의 弊

濟州島民들의 집에서 果木을 栽培함은 將次 其利益을보고 子孫을 爲함이며 또 民戶의 果實을 取하는것을 禁하는 法이 되어있거늘 官使가 民家의 柑橘을 進上한다. 托하여 株를 헤아려 帳簿에 記錄하고 겨우 結實하면 箇數를 세어 監封하여 만약에 其집主人이 摘取하면 竊用罪를 適用하여 官에서 모두 奪取하고 民家에서 利를 볼 수 없어 서로 원망하는 소리가 衝天하였다. 이런 事實을 안 朝廷에서는 守令으로 하여금 每年內所에 柑橘 나무를 栽植하여 10年後에는 其果實을 따 쓰게 하였고 不得已 民家의 柑橘로 進上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充分한 價格을 주어 買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民間에 柑橘 栽植이 自然히 勸獎되고 民怨도 없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③ 民家栽培 果木所以將見其利而爲子孫 計也 且禁取民戶果實已有著令 州官以民戶柑橘稱進上 計株載籍 纜結其實計箇監封 或其主摘取 論以竊用之罪 盡取於官 民不見利 相與怨咨請令守令 每年栽植等 內所種錄 於解由十年之後將不勝不用 而官無飲民之弊民無受罪之怨 若民戶柑橘不得已摘取進上優給其價則人皆勸於栽植而怨咨息矣 (朝實錄 卷36의21 P.77)

④ 帶妻僧侶를 禁止

李朝의 僧徒들은 娶妻함을 定罪하는 法律이 있고 六典에 禁하는 바이어늘 濟州의 僧徒가 公公然히 娶妻하여 寺社로서 집을삼아 其弟子를 使役하여 自己妻子를 養育하며 國家의 賦役이나 負擔이없고 無爲徒食하여 飽煖을 누렸었다. 그러므로 陸地에있는 僧徒들이 이 消息을 듣고 魚群이 못에 모여들듯이 濟州에 모여들고 그들 亦是 便한 生活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州官은 이런 事實은 보기만하고 禁止하지 아니함으로 僧徒들이 弊가 점점 늘어만갔다. 그러므로 朝廷에서는 州官에 命하여 帶妻僧徒들을 골라내어 牧子를 삼고 或은 軍에 充員케 하였다.

④ 僧徒娶妻 律有定罪 而六典所禁 濟州僧徒公然娶妻 以寺社爲家 役其子弟 營其妻子之養 略無公家之役 坐享飽煖 陸地僧徒亦皆聞風 如魚之聚淵 靡然俱効 州官視

爲常事 亦莫之禁實爲弊風請濟州帶妻僧徒 皆推刷 定爲牧子 或補軍額

(王朝實錄 卷36의21 P.77)

⑤ 遊女制의 弊風을 禁止

濟州에는公私婢子와 良家의 女子를 遊女라 稱하여 官府의 名簿에 記錄하여 官婢처럼 使役하는 風俗이 있었다. 이 遊女의 由來는 他地方에서 온 商人과 淫奔하여 큰 利益을바라 淫行한 女人을 懲戒하여 淫風을 禁하려는데서 始作된 것이라고 하나, 實은 도리혀 逆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卽 一段 犯過한 者가 其汚名을 두려워하여 改過코져 하였으나 官이 帳簿에 遊女로 記名되어 登載되면 다시 解除할 수도 없으므로 自暴自棄하여 그들은 오히려 同僚들을 끌어들이어 自己들과 같은 遊女되기를 권하며 그들의 行動은 加一層 恣行無忌하는 것이었다. 遊女가 增加하는 理由이 하나는 或人이 某女에게 원한이 있는 경우에는 某女가 某男하고 奸通하였다하여 風聞을 퍼뜨리면 官에서는 其眞僞를 調査하지도 않고 某女를 끌어다가 遊女簿에 記錄하고 使役시키는 것을 좋아함으로 이는 淫風을 禁하는 것이 아니라 淫風을 勸獎하는 것이 되어버리므로 遊女制風俗은 結局 家庭을 破壞하고 平和스런 百姓의 生活을 不安속에 몰아 넣은 弊害가 크므로 朝廷에서는 遊女制의 惡風을 打破하고 遊女의 名簿를 없애고 이들을 解放하였다.

⑤ 濟州之俗 以其公私婢子與良家之女 稱爲遊女記名於簿 使之如官婢問其所由則曰 此輩見商賈人淫奔數利以亂其配 役之如此者 所以示懲戒禁淫風也 臣謂此輩未被汚名尙畏人知或可改行及 其載名官簿 恣行無忌且好引朋類 或挾恨或風 聞指稱某女奸某人互相援引官亦甘心於使役不卞眞僞籍於遊女是非唯不禁淫風乃勸之也 願自今除遊女案禁稱遊女隨其所犯依律斷罪以示懲戒 (王朝實錄 卷36의21 P.77)

⑥ 權勢家의 牛馬放牧의 弊

濟州島는 畜產地인바 權力家는 自己牛馬를 田野에 放牧함으로 因하여 貧農의 耕作地에 들어가 苗葉을 뜯어먹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濟州의 土地는 좁고 畜産은 繁殖하여 貧民의 田地는 一, 二畝에 不過하다. 밭에 苗葉이 조금 무성하면 權豪家에서 牛馬를 함부로 밭에 放牧하여 苗葉을 다 먹어버려도 貧民은 威勢가 두려워 告訴를 敢히 못하고 비록 官家에 告訴를 하여도 받아주지 않은 實情이었다.

그러므로 朝廷에서는 一般農民을 救하기 爲하여 어떤 者라도 牛馬를 放牧하여 民穀을 害치는 者가 있으면 其家長이 職位高下를 莫論하고 律文에 依據하여 科罪하게 하였다.

⑥ 濟州土地 窄而畜産繁 貧民之田不過 一, 二畝 及其苗葉稍盛 權豪之家 恣放牛馬 盡喫其苗 而貧民畏威 不敢告訴 雖告於官 反不得路 此亦積弊也 臣謂放牛馬損民

穀者其家長 不論職秩高下 並依律文及教旨 坐罪 以裒民瘼

(王朝實錄 卷36의21 P.77)

IV. 結 論

韓國史에 있어서 李氏朝鮮初期 即 太祖 太宗의 王權確立으로 新秩序의 安定을 보게된 時代的 背景아래 世宗時에는 訓民正音을 制定하여 國文字을 갖게하였고 豆滿江 鴨綠江南岸을 擴張시켜 現在이 韓民族의 疆域을 確定하였으니 新羅의 三國統一로서 民族의 原型이된 우리民族은 世宗時代에 이르러 國土 言語 文化 民族精神을 共同으로 하는 完全한 民族文化를 가지게 된 劃期的인 時代라 할 것이며 이런 歷史的事實은 強烈하고도 自覺된 主體的 民族의意識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世宗임금은 濟州島民에 對하여 文明과 德과 懷柔로서 濟州島民을 爲하여 蒙昧한 百姓을 教化시켜 本州人에 比하여 何等이 遜色이 없는 程度로 生活의 安定과 文化發展에 寄與한바 至大하며 濟州島의 立地的 要件과 島民의 生活實態를 洞察하시와 在位 32年間에 걸쳐 島民의 生活向上을 爲하여 在來의 公私積弊를 一掃함은 勿論 制度의 改編을 하였으며 難民과 貧民을 救濟하기 爲하여 適期에 行政的 經濟的 惜處를 하여 難民救恤에 配慮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리고 南海의 孤島 濟州에 對하여 產業上 至大한 關心을 가져 產業의 開發은 勿論 濟州의 特殊產物인 柑橘及 海產物 牛馬繁殖等에 對하여 細心한 配慮와 勸獎를 하였으며 또 倭賊의 蠢動과 海寇의 侵犯에 對하여서도 깊은 關心을 가져 國防上의 要衝으로서 濟州를 再確認함과 同時에 其對備策을 마련하는데 余念이 없었다.

濟州島는 世宗임금의 仁政改革에 依하여 中世的인 樣相을 脫皮하여 近世的 歷史時代로 轉換하여 濟州開化의 起點을 가져오게 하였다.

參 考 文 獻

1. 三國史記
2. 高麗史
3. 新增東國輿地勝覽
4. 耽羅志 李元鎮
5. 耽羅紀年 金錫翼
6. 濟州島略史考 金泰能 (1969年)
7. 李朝王朝實錄
8. 韓國史 近世前期編 (震檀學會)
9. 世宗實錄
10. 增補文獻備考
11. 國史概說 (서울大學國史研究會)